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30619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기원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2. 15. 선고 2020가단668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2행 중 “매수, 임차하기로”를 “매도, 임대하기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조합은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이 폐업할 무렵인 2015년경 아래와 같이 총 26대의 인공신장기(이하 ‘이 사건 인공신장기’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① 이 사건 의원이 개설되기 전에 개설되어 있던 G병원 등(이하 ‘전신 의원’이라고 한다)에는 피고가 2009. 10. 26.경 및 2009. 12. 4.경 각 전신 의원에 판매한 인공신장기 8대와 그 이전부터 전신 의원에 설치되어 있던 인공신장기 2대, 합계 10대의 인공신장기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4.경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면서 전신 의원에 설치되어 있던 위 인공신장기 10대를 인수하였다(이하 위 10대를 ‘조합 소유 인공신장기’라고 한다).

② 전신 의원은 2010. 10. 7. 피고로부터 인공신장기 10대를 임차하면서 인공신장기 1대당 일정 수량 이상의 의료 소모품을 피고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면 인공신장기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내용의 조건부 소유권이전 약정(이하 ‘소유권이전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전신 의원 및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이 사건 조합은 2010. 10.경부터 2015. 5.경까지 합계 47,000세트 이상의 의료 소모품을 피고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약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위 인공신장기 10대의 소유권이 이 사건 조합으로 이전되었다.

③ 이 사건 조합은 2012. 9. 13.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인공신장기 10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신장기 10대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H로부터 인공신장기 10대에 대한 대금 152,9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이 사건 의원에 인공신장기 6대만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5. 4. 10.경까지 인공신장기 10대에 대한 리스료 합계 150,176,710원을 납부하였는데(총 36회차 중

31회차까지 납부), 이는 인공신장기 8대의 매매대금을 상회하므로 위 인공신장기 6대는 이 사건 조합의 소유물이다.

나. 피고는 2015. 11. 초순경 이 사건 인공신장기를 권한 없이 수거한 후 임의로 처분하여 합계 182,6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82,6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송금한 돈은 투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합계 약 4억 4,53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인공신장기 중 조합 소유 인공신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16대에 관한 판단1) 먼저 전신 의원이 2010. 10. 7. 피고로부터 임차한 인공신장기 10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 약정이 있었다거나 전신 의원 및 이 사건 조합이 그 약정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의료 소모품을 피고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합이 2012. 9. 13. 취득하였다는 인공신장기 6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2012. 9. 13. H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인공신장기 10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리스기간 만료 시 이 사건 조합이 인공신장기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리스기간 만료일 전까지 리스계약이 정한 양도가액을 H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위 리스계약에 따른
양도가액을 H에 지급하고 인공신장기를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7, 8, 14호증, 을 제2,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이 피고로부터 인공신장기 10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2012. 9. 13. H와 인공신장기 10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같은 날 리스계약에 따라
H가 피고에게 인공신장기 10대의 대금 152,900,000원을 지급하고 인공신장기 10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요청으로 인공신장기 6대만 이 사건 의원에 설치하고,
2012. 9. 30.경 설치하지 아니한 인공신장기 4대의 대금에 해당하는 5,720만 원을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채권에서 공제하고, 수정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으나 이미 체결된
리스계약을 그에 따라 변경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H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재매입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리스물건에 대한 재매입을 요구하여 피고가 2015.
7.경 H에 재매입금 30,329,93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의원에 설치되어 있던 인공신장기 6대를 모두
재매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인공신장기 중 조합 소유 인공신장기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16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조합 소유 인공신장기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11. 초순경 조합 소유 인공신장기를 수거하여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공신장기의 설치시기, 사용기간, 중고 인공신장기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합 소유 인공신장기가 당시에 잔존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조합 소유 인공신장기를

수거하여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잔존가치가 전혀 없는 조합 소유 인공신장기를 호의로 수거하여 처분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4, 5,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의원이 폐업한 이후 이 사건 의원이 개설되어 있던 건물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섬에 따라 조합 소유 인공신장기를 철거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호의로 조합 소유 인공신장기를 수거하여 처분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석수, 판사 박만호, 판사 신안재